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10 발의연월일: 2021. 6. 21.

발 의 자:김상훈·정진석·김정재

김예지 • 박완수 • 김승수

곽상도 · 조명희 · 이명수

한기호 • 박대출 • 김형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지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중소기업의 고용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고용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u>2021</u>	세액공제) ① <u>202</u>
<u>년 12월 31일</u> 이 속하는 과세연	<u> 3년 12월 31일</u>
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	
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